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62
----------	-------

발의연월일 : 2026. 1. 12.

발 의 자 : 이인영 · 이정문 · 전진숙
김영환 · 이연희 · 김정호
이성윤 · 박균택 · 서영교
윤후덕 · 안태준 · 송기현
이원택 · 임미애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으로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 또한 공항·항만의 24시간 운영 체계 속에서 국가안보와 치안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으로 야간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근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무원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직무의 위험성과 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 및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포함하고, 각각의 묘역을 신설하여 위

힘한 직무환경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및 제13조제1항제5호의3 신
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라목 전단 중 “소방공무원”을 각각 “소방·교정·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5호의3,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교정공무원 묘역

5의4. 출입국관리공무원 묘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정·출입국관리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립호국원	4.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경찰· <u>소방공무원</u> 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 <u>소방공무원</u> 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라. ----- <u>소방·교정·출입국관리공무원</u> ----- ----- ----- <u>소방·교정·출입국관리공무원</u> -----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 ----- -----

• 운영할 수 있다. 1. ~ 5의2. (생략) <u><신설></u> <u><신설></u> 6. ~ 8. (생략) ② (생략)	-----. 1. ~ 5의2. (현행과 같음) <u>5의3. 교정공무원 묘역</u> <u>5의4. 출입국관리공무원 묘역</u> 6.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